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우체국 예금채권)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〇〇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〇〇〇

(소관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70,000,000원 (부당이득금반환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1. 채권자는 소외 ○○○의 부탁으로 소외 ○○○이 20○○. ○. 전 재무자로부터 금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2. 그런데 채무자는 소외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 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무자에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한 직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자신이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원이라는 말을 듣고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제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초과 변제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 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5.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연대보증계약서 및 지급내역서(채권자)	1통
1. 소외 ○○○의 지급내역서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각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채권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17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 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 다 음 -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 ①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 ②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⑤ 별단예금
 - ⑥ 저축예금 ⑦ MMF ⑧ MMDA ⑨ 신탁예금 ⑩ 채권형 예금
 - ⑪ 청약예금
-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 류한다.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フト	·. 채무자기	ㅏ 신청서	에 フ	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	까'	?
----	---------	-------	-----	----	-------	------	-----	----	---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 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 여야 함)
 -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



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 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 에 □ 아디오 → 제구자의 구조시 조제 구동산증기구등본 점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 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	["예"로 대답한 경우] ①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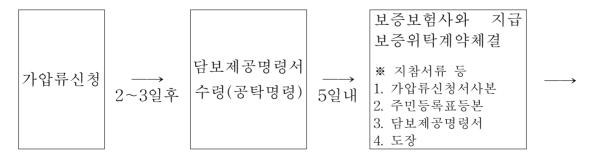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지 기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제278조, 제246조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 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 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ㅇ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재권에 대하여도 소명 섯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